

## 2020학년도 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0. 11. 25.  
· 재적평의원 12명

**1.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2. 장소** 소회의실 (본관 2층)

### 3. 참석평의원 및 불참평의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 평의원	11명	김시욱, 양고승, 김명식, 이진렬, 김계하, 정홍용, 김성주, 김준연, 박한영, 김용래, 박현정
불참 평의원	1명	정덕심

### 4. 출석관계자

- 조선대학교: 이민창 기획조정실장, 이기자 재정예산팀장, 윤경원 재정예산팀원

### 5. 회의 내용

가. 개회 선언: 부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0학년도 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만료로 인한 의장 궐위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 ④항에 의거하여 양고승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개회를 선언 함)

#### 나. 부의 안건

- 1)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의 건
- 2)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자문
- 3)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심의

#### 다. 안건 심의

##### 1) 1호 안건 :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의 건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임원)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선출하기로 함.
- 전자회의에서 제안된 김시욱 평의원(교수평의회 의장)을 제단위 평의원 전원의 합의로 추대하자는 안에 대해 논의함.
- 총동창회 김용래 평의원의 추천과 직원노동조합 양고승 부의장, 총동창회 박현정 평의원, 총학생회 김준연 평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김시욱 평의원을 제단위 평의원 전원의 합의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함.
- 김시욱 평의원(교수평의회 의장)을 참석 평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 함.

#### ■ 심의 결과

- 김시욱 평의원(교수평의회 의장)을 참석평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함.

(※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김시욱 의장이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2호 안건 심의를 진행 함)

##### 2) 2호 안건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자문

#### ■ 제안 설명: 이민창 기획조정실장

##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개요

### 1.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 코로나19 재정상태 점검 및 위기상황 대비 예산 편성
-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예산 편성
-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예산 우선 편성
-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2.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
-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대비 지표별 사업예산 요구 반영
-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노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 3. 예산규모 및 수입 · 지출 개요

#### 1) 수입

- 병원전입금 수입 증대
  - 본병원 임상교수전입금 전입금 16억 증액(전입률 80%에서 85%로 5% 상향), 치과병원 증축자금 1억 임금
- 국고보조금 수입 증대에 따른 대체사업 반영
  - 대학비대면 긴급지원사업 국고 사업비 약 15억
  -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결과 A등급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약 8억
  - 한국형 온라인강좌 신규사업 선정 사업비 2억

#### 2) 지출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반영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교비 특별예산 삭감 15억 4천
  -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 총 34억(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등 기부 장학금 8억 2천, 교비예산 사업비 대체 등)
-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긴급사업비 : 치과대학 임상수기실습동 건축비 등
- 사업이 종료된 불용액 감액

### 4. 예산규모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2,468억으로 1회 추경액 2,442억보다 약 26억(1.1%↑) 증가한 규모로 편성

## ■ 자문 내용

- 구축물 매입비(지산동 방면 구내도로 개설 사업비)로 17억 5천만원이 지출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학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 조선대학교 산하의 모든 학교 및 병원, 치과병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임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질의 함.
- 답변 : 이 사항은 이미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이며, 업무의 특성 및 효율상 대학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제 제기한 부분은 법인에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

- 연구비 증액과 관련하여, 교직원 인건비는 동결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출장비, 회의비 미사용 예산을 교내연구비 1인 2과제로 증액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예산으로 인해 내년 연구비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연구비 예산 수립과 집행을 수립해야 함을 자문함. 또한, 연구 실적이 승진과 재임용에 중복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필수 연구는 연구비 지원에서 제외해야 함을 건의함.
- 답변 : 집단연구과제로 인해 증액이 발생하여 현재 연구비 총액제를 포함하여 연구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해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 연구비 및 인건비 예산 수립 시 구성원 제단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청함.
- 잡손실로 처리되어 있는 암암성화돌연변이센터 예산과, 치과 RIC 사업비(교비) 환수 문제도 대학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자문함.
- 병원 임상교원인건비 전입금과 관련하여 주요 사립대학 병원과의 비교 분석자료를 요청하고, 교원 및 직원 인력수급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를 자문함.
- 답변 : 현재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적정선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요청 시 교수평의회 등과 자료를 공유하겠다.
- 병원 신축문제는 대학 구성원과 병원과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임상교원인건비 전입금 및 병원 수익금이 학교 교비로 전입되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함.
- 답변 : 병원 신축 여부와 관련하여 병원의 한계수입 규모분석이 우선 되어야 하며, 교육용 토지 처분등의 업무 특성 상 법인에서 파악하여 구성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심의 결과

- 원안대로 가결함.

### 3) 3호 안건: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심의

#### ■ 제안설명 : 김시욱 의장

#### ■ 개정사유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 지표항목 실적개선을 위해 개정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운영 세칙을 변경하고자 함
- 평의원 임기 만료 시 추천의뢰 주체를 변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제4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항 변경

- 평의원회 회의 소집 통보를 3일전에서 회의 개최 5일전으로 변경
-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 소집 방법을 변경
- 기존 '평의원회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할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변경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제5조(추천기한) ①항 변경

- 의원회* 180 04. ~
- 평의원 임기 만료등의 궐위 시 평의원 추천 의뢰 주체를 총장에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변경(심의 의결 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의원 추천 의뢰 주체를 총장에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변경)

### ■ 심의 결과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함.

- 다음 -

- 운영 세칙 제4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항 변경
  - 기존: '평의원회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할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변경: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운영 세칙 제5조(추천기한) ①항 변경
  - 기존: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변경: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사항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통보) ②항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평의원 4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금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서명은 참석평의원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시욱 의장을 포함하여 양고승 부의장, 이진렬 평의원, 김성주 평의원이 서명하기로 함.

2020년 12월 1일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장	김시욱	의장	양고승
평의원	이진렬	평의원	김성주

*김시욱* *양고승*  
*이진렬* *김성주*